

■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
 규칙 [별지 제8호서식] <개정
 2015.2.2.>

(앞 쪽)

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서				처리기간
				20일
신 청 인	업 체 명		등록(허가)일	
	성명(대표자)		생 년 월 일	
	주 소	(전화번호 :)		
사 업 장	소 재 지	(전화번호 :)		
	대 지 면 적	m ²	종업원 수	명
검사 업무 개시 희망일				
자 동 차 정 비 업 종				
<p>「자동차관리법」 제45조의2제1항 및 「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」 제16조제1항에 따라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지정을 신청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신청인: (서명 또는 인)</p> <p>시 · 도 지 사 (시장 · 군수 · 구청장) 귀하</p>				
<p>※ 구비서류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자동차정비업 등록증 사본 1부 2. 「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」 제14조에 따른 시설·장비 및 기술인력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. 검사업무 규정(기술인력 및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) 1부 4. 검사 시설·장비의 일람표 및 그 배치도 1부 5. 삭제 <2015.2.2.> 				
				수수료
				없 음

※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(뒤 쪽)

